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2019.01.22 개정사항]

	개정사항	개정내용										
1	원격 공통 법정훈련 훈련비 비지원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개인 정보보호과정,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정(이하, “원격 공통 법정훈련”) 훈련비 지원불가. 단, 2019.01.22 이전 실시신고가 이루어진 과정은 지원										
2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 지원금 산출식 :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조정계수 <sup>1)</sup>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위탁훈련은 90%) 1000인 미만 : 80% 1000인 이상 : 40% ○ 2019.01.22 이후 실시신고가 이루어진 과정에 적용										
3	훈련비 지원금 예외 1	○ 과정당 3000명(단,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은 5000명) 초과되는 경우에는 위 지원금의 15%만 지원 ○ 훈련수료인원수는 2019.01.01 이후 실시신고가 이루어진 과정부터 카운트										
4	훈련비 지원금 예외 2	○ 법정직무교육 <sup>2)</sup> 과정 및 외국어 과정의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우선지원 대상기업 : 50% 1000인 미만 : 40% 1000인 이상 : 20% ○ 2019.01.22 이후 실시신고가 이루어진 과정에 적용										
5	반복 수강 지원제한	○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 2019.01.22 이후 실시신고가 이루어진 과정에 적용										
6	훈련과정별 교·강사(첨삭강사)의 훈련인원 제한	○ 월별 500명 이내 ○ 2019.01.22 이후 실시신고가 이루어진 과정에 적용										
7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table border="1" data-bbox="630 1579 1444 1859"> <thead> <tr> <th>원격 훈련과정의 공급 수준</th> <th>조정계수</th> </tr> </thead> <tbody> <tr> <td>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td> <td>0.7</td> </tr> <tr> <td>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td> <td>0.8</td> </tr> <tr> <td>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td> <td>0.9</td> </tr> <tr> <td>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td> <td>1.0</td> </tr> </tbody> </table>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 수준	조정계수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7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8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9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1.0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 수준	조정계수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7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8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9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1.0											

1) “7.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참조

2)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에 특정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 등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